



K-ISAP-03

승인	
회장	

한국계리업무기준
(제 3 편)

« K-IFRS 제 1019 호 종업원급여 »

한국보험계리사회 운영위원회

2015 년 0X 월 XX 일



목 차

서문.....	2
제 1 장. 총칙	1
1.1 목적.....	1
1.2 범위.....	1
1.3 준수.....	1
1.4 K-ISAP-01 과의 관계.....	1
1.5 용어해설.....	1
1.6 상호참조.....	2
1.7 효력발생일.....	2
제 2 장. 업무수행기준	3
2.1 회계기준의 이해.....	3
2.2 중요성.....	3
2.3 일관성의 원칙.....	4
2.4 의제 의무.....	4
2.5 종업원급여제도의 분류.....	4
2.6 계리적 가정.....	9
2.7 제도 자산.....	9
2.8 자산인식상한.....	9
2.9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9
제 3 장. 발 표(Communication)	10
3.1 계리보고서 명시 사항.....	10
참고사항.....	12

서 문

한국보험계리사회는 회원들이 국내외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리서비스를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계리사회(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에서 공표한 계리업무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of Actuarial Practice)를 채택하여 한국계리업무기준(K-ISAP)을 제정하였다.

한국보험계리사회는 회원들이 계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한국계리업무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하며, 한국계리업무기준은 계리사가 계리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계리업무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이 기준의 목적은 “IAS 19 Employee Benefits” 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19 호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계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계리사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고기업은 K-IFRS 제 1019 호 관련 사항을 포함한 K-IFRS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즉, 종업원급여제도의 분류, 채무 측정을 위한 계리적(보험수리적)가정과 기법의 선택, 공시에 대한 책임이 보고기업에게 있다. IAS 19 또는 K-IFRS 제 1019 호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계리사(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한다.

이 기준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K-IFRS 제 1019 호(또는 IAS 19)와 관련된 계리업무 관행들의 국내외적 수렴을 촉진한다.
- K-IFRS 제 1019 호(또는 IAS 19)에 따른 종업원급여 보고와 관련한 계리사의 기여에 대한 보고기업 및 그 감사인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 K-IFRS 제 1019 호(또는 IAS 19)의 목적에 따른 계리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계리사회(IAA)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정확하고 투명하며 비교 가능한 재무보고를 위한 IASB 와 한국회계기준원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제계리사회(IAA)와 그 정회원인 한국계리사회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이 기준은 한국계리업무기준 (제 3 편) “K-IFRS 제 1019 호 종업원급여”로서, 국제계리사회(IAA)가 2015 년 4 월에 채택한 ISAP3 (Actuarial Practice in Relation to IAS19 Employee Benefits)의 내용을 국내 실정에 부합되도록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한국보험계리사회 운영위원회가 2015 년 XX 월 XX 일에 승인하였다.

제1장. 총칙

- 1.1. **목적** - 이 기준은 K-IFRS 제 1019 호와 관련된 계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계리사에게 지침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신뢰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계리서비스가 전문적이고 주의 깊게, K-IFRS 제 1019 호와 일관되면서 보고기업의 회계정책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 결과가 최종 사용자의 필요에 부합하고,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게 제시되며 충실하다.
 - 사용된 가정과 방법론(모델, 모델링기법을 포함)이 계리사의 계리보고서에 적절하게 공시되어 있다.
- 1.2. **범위** - 이 기준은 K-IFRS 제 1019 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유형의 종업원급여 제도에 관한 실제 또는 추정 K-IFRS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보고기업을 위해 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리사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K-IFRS 제 1019 호와 관련된 계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계리사 (예를 들어 회계 감사 자문, 인수 관련 매수 자문)는 이 기준의 지침을 업무에 관련되는 정도까지 고려해야 한다.
- 1.3. **준수** - [이 기준에서 이 문단은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 1.3 을 대체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리사가 이 기준의 지침을 따르지 못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3.1. 법규 사항 준수가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 1.3.2. 계리 작업에 적용되는 계리사 행동강령 준수가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 1.3.3. 계리사가 미 준수 사항의 성격, 이유, 영향을 계리보고서에 적절하게 공시하는 경우
- 1.4.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과의 관계 - 가능한 경우 이 기준은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의 지침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 기준(모델 기준으로서)의 준수를 선언하는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또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에서 “ 이 기준 ” 이라고 참조된 조항은 적절한 경우 *K-ISAP-03(종업원급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1.5. **용어 정의** - 이 기준은 정확한 의미가 “ 용어 해설 ” 에서 정의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 기준은 K-IFRS 제 1019 호에서 정의된 용어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경우 사용한다.

- 1.6. 상호참조 – 이 기준은 2014년 9월까지 발표된 “**K-IFRS 제 1019 호 종업원급여**”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해석 포함)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2014년 9월 이후에 “**K-IFRS 제 1019 호 종업원급여**”이 수정되는 경우, 계리사는 이 기준의 지침이 어느 정도까지 부합하고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
- 1.7. 효력발생일 – 이 기준은 2015년 XX월 XX일 이후에 수행된 계리서비스에 대해 효력이 있다.

제2장. 업무수행기준

- 2.1. 회계기준의 이해** – 계리사는 K-IFRS 제 1019 호, 해당 기준을 해석한 K-IFRS, 해당 기준이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다른 K-IFRS 의 관련 문단, 그리고 보고기업의 관련 회계정책이 있다면 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 a. 해당 계리서비스에 관련이 있는 다른 K-IFRS 가 있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
 - b. 계리서비스의 특정 부분이 K-IFRS 제 1019 호, 해당 기준을 해석한 K-IFRS, 해당 기준이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다른 K-IFRS 의 관련 문단 또는 관련 회계정책에 대한 대체 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2.2. 중요성** – 계리사는 계리서비스, K-IFRS 재무제표 준비와 관련된 중요성과 해당 재무제표의 감사에 관련된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분해야 한다.
- 2.2.1. 계리업무수행시 적절한 경우 계리사는 대표고객 또는 보고기업으로부터 K-IFRS 재무제표 준비와 관련된 중요성에 대한 지침을 요청해야하며 계리서비스를 수행할 때 해당 지침을 고려해야한다.
 - 2.2.2.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 2.4* 중요성을 적용할 때, 계리사의 계리서비스 관련 중요성 한도는 알려져 있을 경우 보고기업의 K-IFRS 재무제표 준비와 관련된 중요성 한도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계리서비스와 관련한 중요성을 평가할 때는 K-IFRS 재무제표 사용자가 아닌 대표고객 또는 보고기업이 계리서비스의 최종사용자이다.
 - 2.2.3. 이 기준의 이후 문단에서 언급되는 모든 “중요성”은 계리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 2.3. 일관성의 원칙** –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 1.5 합리적 판단* 특히 *문단 1.5.2*를 적용할 때, 계리사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리사에 의해 권고되는 특정한 가정과 기법의 정교한 수준은 계리서비스의 영향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계리사의 전문가적 판단이 적용되는 예가 있다.
- a. 계리사는 가정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계리서비스에 일관성이 있다면 간편 접근법을 가정으로 권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제도가 주로 퇴직 시 일시금 지급인 경우 사망률 가정의 선택은 부채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예로 특정 업무 관련 사고나 손해 급여의 추정 현금 흐름은 매우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할인율 선택 시 지나치게 정교한 접근을 한다면 일관성이 없다.
 - b. 계리사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측정일 기준의 신규 입사자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대신에 다른 날짜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결과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 c. 계리사는 다른 목적으로 선택된 가정(종업원 급여 제도 적립금 결정을 위한)이나 과거에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가정이 당기에도 K-IFRS 제 1019 호 목적에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적용하거나 또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d. 계리사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에 걸친 급여 배분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4. 의제 의무 – 계리사는 보고기업의 종업원 급여 관행과 정책에서 비롯된 의제 의무의 존재 여부와 성격에 대하여 대표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2.3 타인 의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계리사가 계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대표고객에게 해명을 요청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계리사에게 만족스러운 정도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2.5.4 자료의 결함*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지침은 공식적인 제도 또는 합의를 벗어나는 의제 의무를 찾아내거나 분석하는 등의, 계리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적인 의무를 계리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2.5. 종업원 급여제도의 분류 – 보고기업은 자신의 종업원 급여제도를 K-IFRS 제 1019 호에 따라 단기급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해고급여 및 기타장기급여로 분류할 책임이 있다.

- 2.5.1. 계리사는 종업원급여제도의 분류에 관하여 대표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조언을 제공할 때, 종업원급여제도가 복수의 분류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의 요소를 결합한 퇴직급여제도, 또는 의료보장과 급여보장을 모두 포함하는 업무관련상해급여 등) 계리사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조언해야 한다.
- 2.5.2. 계리사에게 보고기업의 종업원급여제도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 대표고객으로부터의 지침을 구해야 한다.
- 2.5.3. 계리사는 보고기업의 종업원급여제도 분류를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2.8 지정된 가정과 방법론*의 지정된 방법론으로 간주해야 한다.

2.6. 계리적(보험수리적) 가정 – 보고기업은 종업원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편익이 없고 서로 양립가능한 가정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 계리사는 계리서비스에 사용되는 가정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선택 및 합리성에 관하여 대표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조언을 할 때,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의 문단 2.6에서 2.9까지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해고급여 또는 기타 장기급여의 측정에 사용되는 제 가정들에 대한 K-IFRS 제 1019 호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지정된 가정을 사용할 때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2.8 지정된 가정과 방법론*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2.6.1. 가정 선택시 일반적 접근법 – 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계리적 가정의 선택과 합리성에 관해 조언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계리서비스의 수행에 필요한 가정들의 유형을 식별한다.
 - b. 각 가정의 유형에 해당되는 정보를 검토한다.
 - i) 재무적 가정과 관련하여 측정일 현재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 및 기타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 정보의 예로는
 - 회사채 및 국채의 수익율,
 - 명목 또는 물가연동채권의 수익율,
 - 관련물가지수의 최근 변동(일반물가 또는 의료원가상승률)과 상승률 예측,
 - 고용 통계 및 전망,
 - 관련 경제 통계 및 전문가 분석자료
 가 포함된다.
 계리사는 보고기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의 실제 결과에 대한 가정과 관련해서는 보고기업의 예상 또한 고려할 수 있다.
 - ii) 인구통계학적 가정과 관련하여, 계리사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보고기업의 종업원급여 대상자 집단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대상자 집단의 경험 검토와 관련하여 이 기준은 계리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적인 의무를 계리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계리사에 의해 검토될 수도 있는 정보의 예로는
 - 대상자 집단에 대한 신뢰할만한 경험 자료,
 - 공표된 표 또는 경험 연구 같은 전문가의 분석,
 - 특정한 인구통계학적 가정에 관련된 일반적 추세에 관한 연구 또는 보고서,
 - 지역 또는 산업의 경제 상황, 대체고용 여건, 보고기업의 인사정책이나 관행과 같이 미래의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관련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계리사는 보고기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의 실제 결과에 대한 가정과 관련해서는 보고기업의 예상 또한 고려할 수 있다.
 - c. 각 가정의 유형에 적절한 형식을 선택할 때, 중요성(문단 2.2)과 비례의 원칙(문단 2.3)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사망률은 흔히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며, 계리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비례는 연도, 고용형태, 위치나 그 밖의 요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 d. 계리사의 의견에 따라 권고된 가정은 편의가 없고, 서로 양립 가능하며, 보고기업에 의해 채택된 경우 보고기업의 최선의 추정을 반영해야 한다.
- 2.6.2. 사망률 가정 – 대표고객에게 사망률 가정의 선택 또는 합리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때, 계리사는 제도 가입자의 미래 사망률의 예상되는 변화를

계리서비스의 중요성과 비례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미래 사망률을 반영하는 기법의 예로는 연도별, 출생연도별, 기간별 사망률 추정을 별개의 사망률표로 포함한 행렬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 2.6.3. 할인율 가정 – 대표고객에게 할인율가정의 선택 또는 합리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때, 계리사는 K-IFRS 제 1019 호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즉, 할인율은 측정일 현재 거래총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 우량 회사채 또는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며, 그러한 채권은 종업원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계리사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할인율 가정을 식별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 a. 수익률 곡선 – 계리사는 예측 급여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데 현물이자율 수익률 곡선을 권고할 수 있다. 계리사는 측정일 현재의 채권 수익률 자료로부터 적절한 수익률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또는 계리사가 K-IFRS 제 1019 호 할인율 선택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또는 적절하도록 조정된) 제 3 자의 수익률 곡선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자의 수익률 곡선을 적용할 경우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 2.3 타인 의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i) 채권 유니버스 – 수익률 곡선을 수립하거나 제 3 자의 수익률 곡선의 적절성을 평가할 경우, 계리사는 수익률 곡선 생성에 사용된 채권 유니버스의 특성(통화와 회사채의 경우 등급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 계리사는 이상치(유니버스에 포함된 비슷한 등급과 듀레이션이 대부분의 채권의 수익률과 실질적으로 다른 수익률을 가진 채권)나 특별한 특성이 있는 채권(콜과 같은)을 처리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ii) 곡선맞춤, 보간 및 보외 – 가용한 동일 통화로 표시된 채권 자료로부터 수익률 곡선을 도출할 때, 계리사가 채권 시장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듀레이션에서의 수익률 추정에는 적절한 곡선맞춤, 보간 또는 보외 기법을 적용하는데 이 때 계리사는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한 기법은 (적절한 스프레드 또는 다른 조정과 함께) 국공채, 낮은 등급의 회사채, 스왑 시장 또는 종업원 급여와 동일 통화에서 최장 듀레이션보다 긴 듀레이션에서 수익률이 존재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나 회사채 수익률과 같은 다른 시장 자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때 계리사는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하여 이 목적에 적절인지 고려한다.

계리사는 이 접근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수익률 곡선에 기반한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을 보고기업의 K-IFRS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 b. 수익률 곡선에 기반한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 – 계리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 가정을 권고할 수 있다.
- i) 측정일까지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에 배분된 급여의 측정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추정
 - ii) 문단 2.6.3 b i)에서 추정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수익률 곡선을 적용 (문단 2.6.3 a 에 기술된 바와 같이)
 - iii) 문단 2.6.3 b ii)에서 결정된 현재 가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값을 산출하는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을 계산
- c. 채권 모형에 기반한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 – 계리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 가정을 권고할 수 있다.
- i) 측정일까지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에 배분된 급여의 측정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추정
 - ii) 문단 2.6.3 c i)에서 추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 흐름을 생성하는 채권 포트폴리오 – 문단 2.6.3 a i)에 기술된 채권 유니버스에서 적절하게 선택된 – 를 식별하기 위해 채권 모형을 적용. 계리사가 채권 시장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듀레이션에서는 문단 2.6.3 a ii) 에 기술된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 iii) 포트폴리오 상의 채권에 대한 단일 가중 평균 수익률을 계산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K-IFRS 제 1019 호의 할인율 선택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또는 적절하게 조정된) 제 3 자의 채권 모형을 적용할 경우,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 2.3 타인 의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d. 대체 접근법 – 계리사는 위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대체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계리사는 이 접근법이 기반한 자료와 가정,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대체 접근법은 측정일까지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에 배분된 추정 급여 현금흐름의 듀레이션 및 현금흐름의 형태(즉, 굴곡이 심한지 여부)가 둘 다 고려되어야 한다. 중요성(문단 2.2)과 비례(문단 2.3)이 적용되며, 대체 접근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i) 계리사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위의 접근법 중의 하나에 따른 가중 평균 할인율과 근사치인 단일 할인율을 권고할 수 있다.

- ii) 계리사는 시장지수 또는 다른 참조율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리사는 시장지수 또는 참조율 산출에 사용되는 채권 자료와 방법론에 대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K-IFRS 제 1019 호의 할인을 선택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또는 적절하게 조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한다. 시장지수 또는 다른 참조율을 적용할 경우,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2.3 타인 의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2.6.4 일반물가상승율 가정 – 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인플레이션 가정의 선택 또는 합리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때, 계리사는 측정일 현재의 시장 기대 및 다른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 정보의 예로는

- 물가지수의 변동,
- 잠재 물가 디플레이터,
- 일반 채권 및 물가지수 연계채권의 수익율(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효과가 고려된),
- 물가상승 전망,
- 관련 지역 요인,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기타 관련 경제 자료,
- 전문가의 분석

이 포함된다.

2.6.5 의료 원가 가정 – 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의료 원가 가정의 선택 또는 합리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경우, 일반 물가상승률과는 중요할 정도로 다를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원가의 미래 변동에 대한 추정을 고려해야 한다. 계리서비스의 중요성과 비례에 따라, 주요 원가 요소 (병원 서비스, 약, 의료기기, 기타 의료 서비스, 행정 비용)에 대해 별도 가정을 고려해야 하며, 미래 기간별로도 다른 가정을 고려해야 한다.

2.6.6 미래 급여 금액 관련 기타 가정 – 어떤 유형의 종업원급여에는 제도의 미래 급여 금액에 일반물가상승율 및 미래의료원가 이외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미래 급여 금액 가정의 선택 또는 합리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경우,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제도의 미래 급여 금액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관련 요소를 식별해야 한다. 그런 관련 요소의 예로는 종업원급여제도의 유형에 따라

- 승진 등으로 인한 임금인상,
- 실제 또는 명목 자산의 투자수익율,
- 급여 사용률 또는 사용 패턴의 변경,
-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 제 3자가 제공하는 급여 보전의 변경,
- 예정된 법정 급여의 변경,

이 포함될 수 있다.

- 2.6.7 가정 수립 절차의 변경 – 계리사는 일반적으로 특정 보고기업에 권고하는 가정을 수립할 때 매년 일관성 있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가정 수립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고객과 변경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변경 여부 및 변경할 경우 계리보고서에 변경에 관한 어떤 정보를 공시할 것인지에 대해 대표고객으로부터 지침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표고객이 가정수립절차의 변경이 K-IFRS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리사에게 변경의 성격과 일반적인 영향에 관해 계리보고서에 공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7 제도 자산(사외적립자산)** – 계리서비스에서 제도 자산을 고려할 경우, 계리사는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한다.
- 2.7.1 제 3자가 제시한 자산 가치 – 계리사는 제 3자(예를 들어 신탁관리자 또는 투자관리자)가 제시한 자산 가치에 의존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2.3.3 타인 의존*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 2.7.2 적격 보험 계약 – 계리사는 적격 보험 계약과 확정급여채무를 정산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타 원천의 환급을 구분해야 한다. 제도 자산에 적격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리사는 이 보험계약들을 과소적립액 또는 초과적립액 계산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리사는 보고기업의 종업원급여채무와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채무를 적절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2.7.3 자산 연동 급여 채무 – 미래 급여 수준이 제도 자산 가치에 영향을 받는 급여(예를 들어, 급여 수준이 제도 자산의 수익에 연동되거나 (문단 2.6.6) 초과적립금 존재 여부에 종속되는 경우)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 조언하는 경우, 계리사는 종업원 급여를 연동된 자산의 성격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 2.8 자산인식상한** – 자산인식상한은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절감의 형태로 보고기업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K-IFRS 제 1019 호는 보고기업이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금과 자산인식상한 중 작은 값을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해석 제 14 호 (IFRIC 14)는 자산인식상한의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계리사는 자산인식상한의 적용 여부와 적용 방법, 제도 규정의 법적 해석이나 최소 적립 요구사항과 같은 관련 사항에 관해 대표고객으로부터 지침을 구해야 한다.
- 2.9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 근무기간에 대한 제도 급여의 배분에 대해 대표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할 경우, 계리사는 K-IFRS 제 1019 호에서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제도 설계를 다룰 때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

제 3 장. 발 표(Communication)

- 3.1. 계리보고서 공시 사항 – 계리사는 *K-ISAP-01 (계리업무 일반기준) 제 3 장 발표*를 준수할 뿐 아니라 다음 사항들을 계리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 a. 문단 1.3 의 지침에 따른 중요한 위반 사항
 - b. 의제 의무와 관련하여 대표고객이 제시한 정보에 의존 – 문단 (2.4)
 - c. 공시가 요구된 가정 선택 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문단 (2.6.7)

(부록 1)**용어해설**

- **계리서비스(Actuarial Service)** – 계리 작업을 수행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조언, 권고, 조사결과 또는 의견의 제시를 포함한다.
- **발표(Communication)** – 계리서비스와 관련하여 계리사가 진행하는 (구두진술을 포함한) 모든 진술
- **의제 의무(Constructive Obligation)** – 보고기업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의해 생기는 의무
 1. 보고기업이 과거 관행의 확립된 패턴, 공개된 정책, 또는 충분히 구체적인 성명서를 통해 어떤 책임을 수용할 것이라고 다른 당사자들에게 표시하고
 2. 그 결과, 보고기업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타당한 기대감을 다른 당사자들이 가지게 만들었을 때에 의제 의무가 생긴다.
- **종업원 급여(Employee Benefits)** – 종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또는 고용을 종료할 때 보고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 **최종이용자(Intended User)** – 대표고객을 포함하여 계리사가 계리보고서를 이용하여 계리서비스를 수행하는 때에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
- **K-IFRS 보고서(K-IFRS Report)**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고기업이 준비하는 재무제표
- **대표고객 (Principal)** – 계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고용한 당사자로서, 대개는 고객 또는 계리사의 고용주가 된다.
- **전문가적 판단 (Professional Judgment)** – 계리적 교육 훈련 및 경험에 입각하여 계리사가 내리는 판단
- **계리보고서 (Report)** – 계리서비스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록물의 형태로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발표 자료로서, 서면문서, 컴퓨터문서, 스프레드시트, 전자서신(e-mail), 웹사이트, 슬라이드 발표자료, 음성 또는 영상 기록물 등이 될 수 있다..
- **보고일 (Report Date)** – 계리사가 계리보고서를 최종이용자에게 교부한 날짜이며, 대개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이다.
- **보고기업 (Reporting Entity)** – K-IFRS 보고서에 주로 의존하여 그 기업에 관한 재무정보를 획득하려는 이용자들을 위해 그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업
- **계리적 작업(Work)** – 계리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계리적 활동을 의미하며, 대개 과제수행 환경에 관한 지식의 획득,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 가정과 방법론의 선택, 계산, 계산 결과의 합리성 조사, 다른 사람이 수행한 작업결과의 사용, 의견과 조언의 구상, 문서화 작업, 계리보고서 작성 및 기타 발표 등을 포함한다.

(부록 2)

참고 사항

이 부록은 단지 정보성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계리업무기준의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효력이 없다.

2.1 배경

K-IFRS 제 1019 호는 K-IFRS 제 1102 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주식기준보상 이외의 종업원급여에 대한 고용주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AS19 Employee Benefits 을 개정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도 K-IFRS 제 1019 호 ‘종업원 급여’를 2011년 11월에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이 기준의 발표 시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AS19 을 두 번 개정하였다.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 기여”로 명명되고 2013년 11월에 발표된 소규모 개정
- “할인율: 지역 시장 이슈”로 명명되고 IFRS 2012-2014 연차개선에 포함된 2014년 9월에 발표된 개정

K-IFRS 제 1019 호의 핵심원칙은 종업원급여를 위한 비용은 그 급여의 지급일이 아니라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2 종업원급여제도의 분류

K-IFRS 제 1019 호에서는 (주식기준보상을 제외한) 종업원급여제도를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한다.

- **단기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급료와 임금, 사회보장기여금, 유급연차휴가, 유급병가,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 그리고 재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보조가 있는 재화나 용역)을 포함한다.
- **퇴직급여**는 확정기여퇴직금제도,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후 생명보험 및 퇴직후 의료급여 등을 의미한다. 퇴직급여는 다시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로 구분한다.
 - 확정기여제도에서는 보고기업이 확정기여금을 펀드에 지급하지만, 그 펀드의 자산이 모든 종업원들에게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때에도 보고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의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는 장기근속휴가 또는 안식년휴가, 기념일 또는 장기근속 급여, 그리고 장기장애급여 등을 포함한다.
- **해고급여**는 보고기업의 결정으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해고의 대가로서 보고기업이 제시하는 대가를 종업원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급여를 말한다.

2.3 분류별 회계처리

단기급여 및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 단기급여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예상지급금 또는 예상기여금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종업원이 근무한 회계연도에 인식한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및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및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귀속시킨다. 사용자는 측정일 현재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급여제도 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재무상태표의 부채(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순부채(자산)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이라고 한다. 사용자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순자산은 자산인식상한의 적용을 받으며, 그 자산인식 상한은 제도로부터의 환급 또는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 절감의 형태로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로서 정의된다.

사용자는 손익계산서에 근무원가와 (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를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근무원가에는 회계기간 동안의 근무에 귀속되는 급여의 비용, 회계기간에 발생한 급여제도의 수정이나 삭감에 의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회계기간에 발생한 정산으로 인한 손익이 포함된다. 순이자는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을 회계기간 동안의 기여금 납입 및 급여금 지급을 반영해서 조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실제투자수익과 할인율에 의한 예정투자수익의 차이, 할인율 또는 다른 가정의 변경에 의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경험손익 등,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모든 변동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된다.

K-IFRS 제 1019 호에는 특정 장기장애급여 또는 업무관련상해급여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있다. 종업원의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급여수준이 동일한 경우에, 그 급여의 예상비용은 장기장애 또는 업무관련상해의 발생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인식된다.

해고급여 : 해고급여는 고용의 종료에 의해 발생하고, 보고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취소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 구조조정비용을 인식할 때 해고급여를 인식한다. 해고급여는 일시금, 연금액 증액, 또는 일정 기간 임금 지급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4 K-IFRS 보고서 공시

K-IFRS 제 1019 호는 보고기업이 K-IFRS 재무제표에 다음 정보들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
-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상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 확정급여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정보

K-IFRS 제 1019 호에 관련된 계리 서비스에는 흔히 보고기업이 이러한 공시 의무를 완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계리사가 실무적으로 특별히 가치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종신청구제한이 없는 퇴직후 의료급여, 기업에게 초과 적립금 환급을 제한하는 급여제도, 단일 유형에 투자된 제도 자산의 집중, 예상 보험 보상과 관련된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 특이하거나 기업 또는 제도에 특유한 비일상적인 위험과 제도 특성에 관한 공시
- 전사적위험관리(ERM),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장수 스왑 등과 같은 리스크관리 전략에 관한 공시
- K-IFRS 재무제표상 금액의 연초에서 연말까지의 조정된 내역을 포함한 K-IFRS 재무제표상 금액에 대한 설명
- 특성과 리스크에 따른 종업원급여제도들의 통합 또는 분해의 적정 수준
- 확정급여제도가 보고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예상 기여금 등)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공시
- 확정급여채무의 만기 구성에 관한 공시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가정들과 그 가정들의 합리적인 변동가능 범위, 그리고 변동으로 인해 측정기준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시

K-IFRS 제 1019 호는 중요성 또는 합리적인 변동가능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수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가정의 합리적인 변동가능범위를 계량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K-IFRS 제 1107 호 판단 근거 문단 B19 를 언급하고 있다.